

## 전자칫판부터 프라이팬까지... 일상 속 '친환경 선택지' 넓어진다

- 기후에너지환경부, 환경표지 생활밀착형 제품군 대폭 확대 및 인증기준 개선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'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'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로,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,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산업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.

우선 가정, 교육 현장, 자동차 등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칫판,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\*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된다. 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, 유해물질 사용제한, 자원순환성,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었다.

\* 전자칫판, 프라이팬, 헤어드라이어, 에어프라이어, 실내운동용품,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,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, 무인정보단말기,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,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

기존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환경성 상향 등 기준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. 냉장고,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(GWP)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했고,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.

아울러,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하여 인증기준의 중복을 줄이는 등 대상제품 체계도 정비했다.

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.

2. 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	책임자	과 장	기대정 (044-201-6531)
	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	담당자	사무관	김지수 (044-201-6530)



□ 제도개요

- (목적) 동일용도 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\*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제도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(법정 임의인증)



\* 제품의 전과정(원료취득-생산-사용-재활용-폐기)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

- (법적근거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등
- (추진경과)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행('92.4.),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시행('05.7.), 국제 환경라벨링 시스템인정서(GENICES) 취득('11.10.)
- (인증대상) 160개 제품군
- (인증기간) 3년(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)
  - ※ 인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간 확대(2→3년, '20.6월)
- (인증기준) 「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(환경부 고시)
  - 환경성, 품질, 제품 보급 확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정 후 동일 용도 일반제품 대비 변별력을 갖춘 기준 설정
- (인증사유)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7대 인증사유\* 운영
  - \* 1) 자원순환성 향상, 2) 에너지 절약, 3) 지구환경오염 감소, 4) 지역환경오염 감소, 5) 유해물질 감소, 6) 생활환경오염 감소, 7) 소음·진동 감소
- (인증혜택) 공공기관 의무구매,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, 정부 운영 제도 가산점 부여, 지자체 우선구매 반영, 녹색매장 입점 지원 등

- (신설 제품군\_10종) 전자칠판, 프라이팬, 헤어드라이어, 에어프라이어, 실내운동용품,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,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, 무인정보단말기,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,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
- (인증기준 개정\_26종) 국내 산업여건 고려, 환경정책 정합성 제고 및 시험방법 합리화 등을 위해 26종 제품군 인증기준 개정
  - (산업여건 반영) 전선 및 케이블, 건축용 실링재, 식기류 등 4종
  - (환경정책 정합성 제고) 대변기, 주방용 세제, 가스보일러, 냉장고, 에어컨디셔너, 창호 및 창호부속품 등 16종
  - (시험방법 합리화 등 기타) 탈취제, 제설제 등 5종
- (폐지 제품군\_5종) 제품 특성, 유사·중복 고려하여 5종 제품군 폐지
  - (유사품목 통폐합)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, 의자, 벽지 등 5종